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2. 22(화) 17:00		
배포일시	2010. 2. 22(화) 16:00	담당부서	국고국 국채과
담당과장	우해영 (2150-5130)	담당자	서정현 사무관(2150-5133)

제목 :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 시행

- 정부는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

 - 최근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,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 집중에 따른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증대
 - 반면,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, 재발행, 교환 등 현행 수급조절 제도는 절차·요건 등 세부규정 미비로 활용에 제약

 -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과 재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교환제도도 수급조절 목적으로 탄력적 활용 계획
 - (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)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요건을 확대하고, 대상채권에 경과물도 포함
 - (국고채 재발행) 국고채 재발행 요건으로서 수급불안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발행절차는 국고채 정례입찰 경우를 준용
 - (국고채 교환)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발행 종목과 교환(수급조절 목적)하는 형태의 국고채 교환을 탄력적으로 시행
- * 기존에는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되는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와 교환해 주는 유동성 제고 목적의 국고채 교환만을 시행

□ 금번 개선 방안에 따라 **11.2월중 관련규정* 개정**을 완료하고,
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활용할 계획

*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지침 및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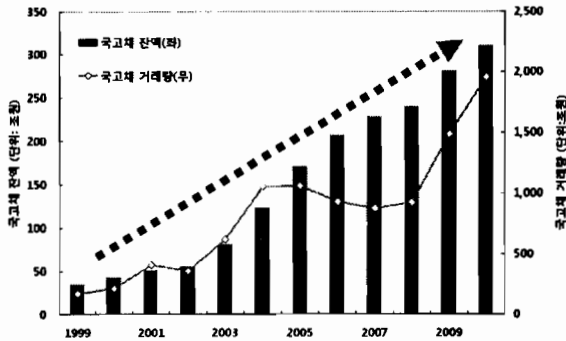
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

11. 2

국 채 과

-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국고채 수요 및 국고채 시장 참여자가 크게 증가

<국고채 시장 규모 확대>



<국고채 수요 증가>



- 그러나, 국고채 수요가 지표물*과 같은 특정 종목으로 집중됨에 따라 종목별로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

*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목 (경과물은 이미 발행이 완료된 종목)

- 특히, 외국인의 국채투자가 '10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종목별 물량 부족현상을 야기할 우려 증대

* 국고채 39개 종목중 외국인 보유비중이 40% 이상(발행잔액 대비)인 종목은 3년물로 발행된 5개 종목('11.1월말 기준)

- 또한, 신규 국고채 발행 초기에는 공급량 부족에 의한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

- 물량 부족시 인도 불이행 및 금리 왜곡 등이 발생하나, 현행 수급조절 수단*은 절차·요건 등 세부규정 미비로 활용이 곤란

*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, 국고채 재발행, 국고채 교환제도 등

- ※ '11년도 국채발행계획 발표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현행 수급 조절 수단의 개선방안 마련 방침을 발표 ('10.12.30)

II

현행 시장 수급조절 수단 현황 및 문제점

1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제도

- (현 황) 국고채전문딜러(PD)가 지표물* 시장조성중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, 반환을 조건으로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
 - 정부는 발행에 응하여야 하며, 반환시 국고채는 소각
- (근거규정)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지침
- (문제점) 사용요건이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, 지표물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

2 국고채 재발행(Re-opening) 제도

- (현 황) 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과수요로 시장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, 해당 종목을 추가적으로 발행
- (근거규정)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
- (문제점) 재발행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, 구체적인 사용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시행이 곤란

3 국고채 교환제도

- (현 황)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되는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와 교환하거나(유동성 제고),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기발행 종목과 교환 (수급 조절)
- (근거규정)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
- (문제점) 수급조절 목적보다는 유동성 제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 데에다,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시장충격 가능성 상존

Ⅲ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

1 환매조건부 국채 발행

가. 개선 방향

-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요건을 확대하고, 대상채권에 경과물도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

나. 주요 내용

-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신청 요건을 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 개정
 - 요청 대상 국고채권을 국채지표종목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경과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채환매거래의 요청) ①국채전문 딜러는 국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한 국채지표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경우에 당해 종목의 국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발행하여 줄 것을 (이하 생략).	제4조(국채환매거래의 요청) ①..... 국고채권의 수요증대로 국채시장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(이하 생략).

- 환매조건부 발행 요청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채환매거래의 요청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종목의 국고채권을 국채전문딜러에게 발행하되, 일정기간후에 동국고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을 부가하도록 한다.	제4조(국채환매거래의 요청) ③..... 국채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종목의 국고채권을 국고채전문딜러에게 발행할 수 있다. 이경우

- **신청가능수량 및 환매이자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, 비지표물의 환매조건부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기간 연장 범위를 조정**

현행	개정안
○ (신청가능수량) 공매도한 국고채권 이내, 최대한도는 종목당 500억원	○ (신청가능수량) 각 PD는 종목당 최소 10억원, 최대 500억원을 10억원 단위로 신청 가능
○ (환매이자율) 한은 발표 콜금리의 90%	○ (환매이자율) 한국은행 발표 은행간 무담보콜금리(익일물)의 90%
○ (환매기간) 최대 90일로 동일종목의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 가능	○ (환매이자율) 최대 90일 또는 동일종목 다음 발행일까지 연장 가능

2 국고채 재발행

가. 개선 방향

- **국고채 재발행 요건, 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재발행 관련 PD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**

나. 주요 내용

- **현 발행규정에 경과물 재발행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발행 요건과 절차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**
 - ① **(발행요건)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**
 - 특정 종목의 국고채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**과다 보유·매집 행위**로 원활한 시장 형성이 힘든 경우
 - 국고채 지표물 변경에도 불구하고 **직전 지표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추가 발행 필요**가 있을 경우
 - 기타 특정 경과물 종목의 **시장유동성을 제고할 필요**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② (발행결정) PD의 요청*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발행

* 일본·이탈리아 등도 PD의 요청을 재발행 요건으로 하고 있음

○ 단, PD 요청 시 PD 중 30% 이상의 동의를 기본 조건으로 부과

③ (발행절차) 현행 국고채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

○ 발행 방법 : 현행 국고채 경쟁입찰과 동일

○ 입찰 공고 : 매월말 월간 국고채발행계획 공표시 포함

○ 발행 물량 : 해당 종목 발행잔액의 30% 범위내에서 시장상황 및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

□ 시장소화가 필요한 정규 발행 물량이 아니므로 PD의 인수 의무 평가 대상 및 비경쟁인수권한 행사 대상 종목에서 제외

* 현재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국고채 교환도 PD 평가 대상에서 제외

3

국고채 교환

□ 유동성 제고 목적의 교환과 함께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

○ '10.12월 물량이 부족한 경과물 국고채 종목의 추가 발행을 위해 수급조절용 교환을 처음으로 시행(3년물, 0.34조원)

□ 국고채 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*하되, 발행종목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지표물과 경과물 중에서 선택

* '11년중 0.5조원 규모로 10차례 실시 예정(10년중 7차례 총 2.93조원 교환)

1. 관련 규정 개정 : '11년 2월중

-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거래지침 개정
-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
- ※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PD협의회 개최 (1월말)

2. 제도 시행 : 규정 개정 이후

-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제도 : PD 요청시 시행
- 국고채 재발행 제도 : PD 요청 또는 시장불안 등 필요시 시행
- 교환제도 : 유동성 제고 및 수급조절 필요시 시행